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024

발의연월일: 2021. 2. 9.

발 의 자:김영호·신정훈·최종윤

서영교 • 이장섭 • 박성준

이재정 · 김병주 · 변재일

이병훈 · 이성만 · 박영순

소병훈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10년 69건에 불과했던 이 법 위반사건 발생건수는 2019년 기준 914건으로 14배 이상 급증했고, 최근 연쇄살인범들이 살인에 앞서 자신의 욕구충족을 위해 잔혹한 방식으로 동물을 죽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물에 대한 금지행위에 동물 학대 목적에 따른 유형 분류가 세분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무엇보다 동물을 죽이는 행위가 살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실제 1997년 미국 보스턴 노스이스트 대학의 연구결과 동물학대범 중 45%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연구결과도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음.

이에 자신의 욕구충족을 목적으로 동물을 잔혹하게 죽이는 동물학대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경찰의 정보수집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동물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함으로써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동물학대범죄자가 살인범죄자가 될 가능성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1호, 제46조제1항,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 신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자신의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잔혹한 방식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법률 제16077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제1호 중 "제8조제1항"을 "제8조제1항(제1호의2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① 제8조제1항제1호의2를 위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다.

제4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3(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면서 1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동물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②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제1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

- 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 병과한다.
- ③ 법원이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 ⑤ 제1항에 다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의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 1. 동물학대 행동의 진단·상담
- 2. 소유자등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게 하기 위한 교육
- 3. 그 밖에 동물학대행위자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⑦ 형벌과 병과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4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4(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정보수집 등) 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에 따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제8조제1항제1호의2를 위반하여 제46조제1항에 따른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와 이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동물학대범죄를 저지른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정보수집 등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8조제1항제1호의2를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 |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
| 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 |
|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 |
| 다.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u><신 설></u> | 1의2. 자신의 욕구 충족을 목적 |
| | 으로 잔혹한 방식으로 죽음 |
| | 에 이르게 하는 행위 |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 법률 제16077호 동물보호법 | 법률 제16077호 동물보호법 |
| 일부개정법률 | 일부개정법률 |
| 제46조(벌칙) <u><신 설></u> | 제46조(벌칙) ① 제8조제1항제1호 |
| | 의2를 위반하여 동물을 죽음에 |
| |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 |
| |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
| |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u>②</u> |
|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 | |
| 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에 처한다. | |
|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 | 제8조제1항(제1호의2는 제외 |
| 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 한다) |
| 행위를 한 자 | |

(생략)
 ②~⑤(생략)

<신 설>

- 2. (현행과 같음)
- ③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5 항까지와 같음)
- 제46조의3(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동물학대행위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 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면서 1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 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동물 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을 병과할 수 있다.
 - ②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제1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 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 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 령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 형을 선고할 경우에 병과한다.
 - ③ 법원이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

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 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 내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 한다.

- ⑤ 제1항에 다른 수강명령 또 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 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 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 고,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 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 한다. 다만,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 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 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 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 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 1. 동물학대 행동의 진단·상담
 2. 소유자등으로서의 기본 소양
 을 갖추게 하기 위한 교육

<신 설>

- 3. 그 밖에 동물학대행위자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⑦ 형벌과 병과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이수명 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46조의4(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정보수집 등) 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에 따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제8조제1항제1호의2를 위반하여 제46조제1항에 따른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와 이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을 할 수 있다.